

#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4. 12. 19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 12. 18(목), 신종갑 의원 외 17인
- 나. 회부일자 : 2014. 12. 18(목)
- 다. 상정일자 :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14. 12. 1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종갑 의원

### 가. 제안이유

지난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단호히 대처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중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임.

- 2)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로써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함.
- 3)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다양한 주민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함.

### 3. 검토보고 (김용범 전문위원)

- 본 안건은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 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기초 지방의회를 포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에 단호히 대처하고자 결의함.
-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1991년 부활된 이후 23년간 끊임없는 쇄신과 혁신을 거듭하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여 왔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 발전시키는데 구심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음.
-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로써 절차상 심각한 하자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기초의회 폐지와 기초 단체장의 임명제 도입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결정권과 자치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의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뿌리 채 뽑아 버릴 수 있는 반민주적, 반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이에 마포구의회는 국민적 합의가 없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취소할 것을 마포구 40만 구민의 뜻을 모아 결사적으로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까지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권한을 찾고자 하는 의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적법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